2 (제262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(정재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234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2. 29.

발 의 자: 정재환, 문희성, 홍영진,

문기호, 박경흠, 안영호,

김태욱, 이명녀, 강혜순,

김도운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사업 등(안 제4조)
- 다. 위탁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의 구축(안 제6조)
- 마. 준수사항(안 제7조)
-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- 4. 근거법규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3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4. 2. 23. ~ 2. 28.(5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 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보호관찰 대상자 등"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, 사회 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보호 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사업 등)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심리적·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
 - 2.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
 - 3.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
 - 4.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·교육
 - 5.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
 - 6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
 - 7.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
 - 8.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

4 (제262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5조(위탁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,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제7조(준수사항)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- 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 -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"보호관찰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 - 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
 - 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 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 - 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 - 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 -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"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사람
 - 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 - 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- 6 (제262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 -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"갱생보호 대상자"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2. 미첨부 사유

○ 동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

3. 작성자

○ 소 속: 복지지원과

○ 직 급: 지방농업주사

○ 이 름: 김 선 정

○ 연락처: 290-4491